

종로구 북촌 특별관리지역 지정 고시

「관광진흥법」 제4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10, 「서울특별시 관광진흥조례」 제12조, 「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진흥조례」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종로구 북촌 특별관리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, 이를 고시합니다.

2024년 6월 28일

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

1. 고 시 명 : 종로구 북촌 특별관리지역 지정

2. 지정사유

- 지역의 일상을 경험하고자 하는 방문객 증가로 관광자원 범위가 주거지역 까지 확대됨에 따라 수용력의 초과로 주민 정주권이 침해되는 사례 발생
- 「관광진흥법」 제48조의3에 따라 주거지역 관광명소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세부 필요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
- 주민 정주권 보호 및 올바른 관광문화 정착을 위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과 균형을 이루며 지역경제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관광정책 기반마련

3. 지정구역 위치 및 면적

구역명	위치	면적	비고
종로구 북촌 특별관리지역	종로구 북촌 일대 (가회동, 계동, 원서동, 안국동, 재동, 화동, 사간동, 소격동, 송현동, 팔판동, 삼청동 등)	1,128,372.7㎡	북촌 지구단위계획 구역과 동일



< 북촌 특별관리지역 지정구역 >

4. 지정일 : 2024년 7월 1일

5. 조치사항 ※ 관련 도면 : 붙임 참조

○ 특별관리지역 및 조치구역 설정으로 단계별 조치사항 추진

구분	조치구역	주요 조치사항	계도기간	시행기간
법적 조치	레드존	관광객 방문시간 제한구역 설정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	2024년 10월~ 2025년 2월	2025년 3월
	전세버스 통행제한구역	전세버스 통행 제한구역 설정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※ 전세버스 승하차장 조성	2025년 7월~ 2025년 12월	2026년 1월
일반 조치	오렌지존	집중 계도	2024년 10월 이후 시행	
	옐로우존	집중 모니터링	2024년 10월 이후 시행	

※ 계도일 및 시행일 확정·변동 시 변경 고시 예정

6. 구역별 주요 조치사항

구역	항목	주요 조치사항		
법적조치	주거지역에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구역(북촌로11길 일대)			
	레드존	조치 방안	방문시간 지정	● 특정시간대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
			과태료 부과	● 방문시간을 어길 시 과태료 부과 가능
			집중청소	● 청소 전담인력 투입을 통한 마을환경 관리
			순찰	● 북촌마을지킴이 투입
			안내판	● 특별관리지역 조치구역 안내판 설치
			모니터링	● 지속적인 방문객 현황 및 실태 파악
	운영 방법	1단계	인력을 활용한 계도 활동	
		2단계	방문시간 외 레드존 출입 시 과태료 부과	
	전세버스 통행제한구역 : 북촌로 일대 단속시스템을 통한 관리 및 과태료 부과			
일반조치	유동인구가 많고 주거와 상권이 혼재된 구역(북촌로5가길, 계동길 일대)			
	오렌지존	조치 방안	방문시간 지정	× 마을 에티켓 계도
			과태료 부과	× 과태료 미부과
			집중청소	▲ 필요 시 청소 전담인력 투입 검토
			순찰	▲ 필요 시 북촌마을지킴이 투입 검토
			안내판	● 에티켓 안내판 설치
			모니터링	● 지속적인 방문객 현황 및 실태 파악
	운영 방법	1단계	안내문, 게시판을 활용한 정숙 관광 홍보	
		2단계	인력을 활용한 계도 활동	
	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구역(북촌로12길 일대)			
	옐로우존	조치 방안	방문시간 지정	× 마을 에티켓 계도
			과태료 부과	× 과태료 미부과
			집중청소	▲ 필요 시 청소 전담인력 투입 검토
			순찰	▲ 필요 시 북촌마을지킴이 투입
에티켓 안내판			● 에티켓 안내판 설치	
모니터링			● 지속적인 방문객 현황 및 실태 파악	
운영 방법	1단계	집중 모니터링 추진		
	2단계	필요시 레드존(또는 오렌지존)으로 설정 후 관리		

□ 법적조치 -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구역(레드존)

- 시행시기 : 2024. 10월부터 시범운영, 2025년 1월부터 본격시행(과태료 부과)
- 제한구역 : 북촌로11길 일대 약 34,000m²
 - ※ 특징 : 주거용 한옥이 밀집된 곳으로 방문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
- 제한시간 : 17:00부터 익일 10:00까지 ※ 방문시간: 10:00~17:00
- 제한내용 : 제한시간 내 제한구역의 관광객 방문 금지
- 관리방안 : 정주환경 보호를 위한 방문객 관리방안 설정

조치구역 설정	방문시간 지정	과태료 부과	집중청소	순찰	안내판	모니터링
○	○	○	○	○	○	○

- 주요 조치사항
 -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
 - 청소 및 계도·단속 전문인력 운용
 - 조치구역 안내판 설치 및 모니터링 등
-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추진방법
 - (1단계) : 인력을 활용한 마을방문시간 계도 활동
 - (2단계) : 제한시간 내 제한구역 출입 시 과태료 부과



< 북촌로11길 일대 레드존 구역 >

□ 법적조치 - 전세버스 통행 제한 구역1)2)

- 시행시기 : 2025. 7월부터 시범운영, 2026년 1월부터 본격시행(과태료 부과)
- 대상구역 : 북촌로 (안국역사거리 ~ 삼청공원 입구) 약 1.5km ※ 약 27,500㎡
 - ※ 특징 : 전세버스 불법 주정차로 인한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
- 제한시간 : 상시(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 포함)
- 제한내용 : 구역 내 전세버스 통행금지
- 관리방안 : CCTV 차량번호판 인식시스템 설치 및 통행 시 과태료 처분
- 주요 조치사항
 - 북촌로 일대 전세버스 통행 제한구역 설정
 - 과태료 부과를 위한 CCTV 설치 및 차량번호판 단속시스템 구축
 - 전세버스 승하차장 조성
- 전세버스 통행제한 추진방법
 - (1단계) : 기본 및 실시설계, 교통규제심의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 추진
 - (2단계) :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활용 단속(특별관리지역 진입 지점) 및 전세버스 승하차장 조성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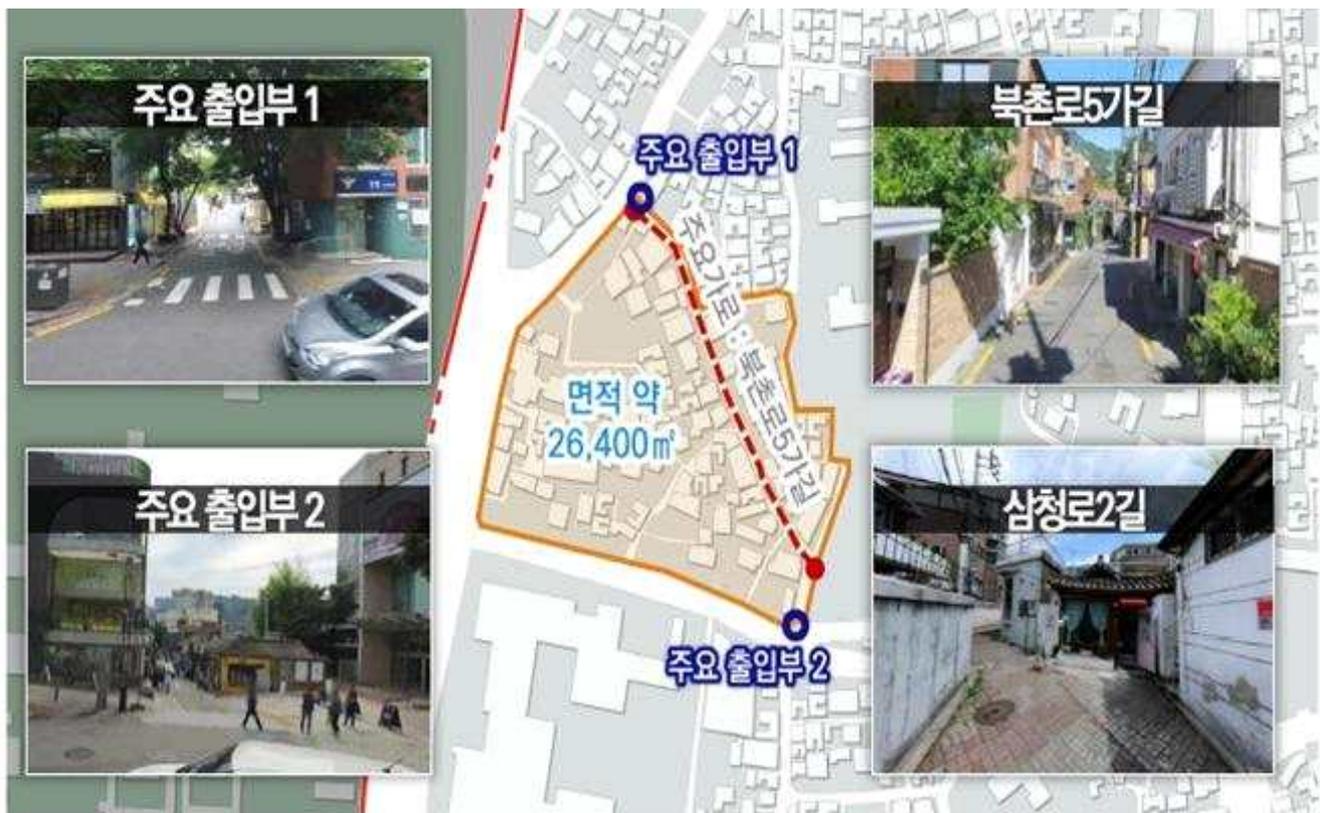
< 북촌로 일대 전세버스 통행 제한 구역 >

1)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[별표1]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
 2) 설계용역 추진과정에서 지정구역이 변경될 수 있음

□ 일반조치 - 집중 계도 구역(오렌지존)

- 시행시기 : 2024. 10월
- 위 치 : 북촌로5가길, 계동길 일대
 - ※ 특징 : 주거와 상업시설이 혼재된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
- 범 위 : 북촌로5가길 (약 26,400m²), 계동길 (약 34,000m²)
- 관리방안 : 정숙 방문을 위한 계도 위주의 활동 추진
- 주요 조치사항
 - 필요 시 전담 청소인력 투입
 - 필요 시 계도 전문인력 운용
 - 조치구역 안내판 설치 및 모니터링 등

조치구역 설정	방문시간 지정	과태료 부과	집중청소	순찰	안내판	모니터링
○	×	×	△	△	○	○



< 북촌로5가길 일대 오렌지존 구역 >



< 계동길 일대 오렌지존 구역 >

□ 일반조치 - 집중 모니터링 구역(옐로우존)

- 시행시기 : 2024. 10월
- 위치 : 북촌로12길 일대
- ※ 특징 : 관광 관련 민원이 증가하기 시작한 지역
- 범위 : 약 11,700m²
- 관리방안 : 기초 계도활동과 집중 모니터링 추진
- 주요 조치사항
 - 필요 시 전담 청소인력 투입
 - 필요 시 계도 전문인력 운용
 - 조치구역 안내판 설치 및 모니터링 등

조치구역 설정	방문시간 지정	과태료 부과	집중청소	순찰	안내판	모니터링
○	×	×	△	△	○	○



< 북촌로12길 일대 옐로우존 구역 >

7. 과태료 부과·징수

-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및 전세버스 통행제한 조치를 위반한 자
 - 「관광진흥법」 제48조의3 제7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·징수는 「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진흥조례」 개정을 통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 예정

8. 열람장소

- 고시 관련 세부 내용에 대하여 종로구 관광체육과(☎02-2148-1853)에 관계 서류 비치 및 열람

